

FINAL 모의고사 소방장 법령Ⅱ정오표(2020.10.23.)

페이지(p)	오(수정 전)	정(수정 후)
p 12 17번 ④	0.46m ²	0.46m
p 116 3번 ②	높이기 한	높이기 위한
p 164 17번 해설 ③, 도표	0.45m ²	0.45m
p 287 24번 해설 ②◎	1만 5천제곱미터 초과마다 1명 이상 추가	1만5천제곱미터[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펌프차, 소방물탱크차 등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]마다 1명 이상 추가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(9.15)

- 1)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등의 동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 조정(제12조제1항제6호) :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서 "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노유자시설의 노인 관련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"를 제외함.(시행, 20.9.15)
- 2)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위원 조정(제18조의3제3항) :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의 정족수를 현행 "13명"에서 "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"으로 조정하여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만으로 회의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함.(시행, 20.9.15)
- 3)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 :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최소선임기준 1명, 다만,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하지만,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「소방장비 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, 소방물탱크차,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함.(시행, 20.9.15)
- 4)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응시자격 요건 추가(제23조제1항제5호자목 신설) :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"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"을 추가함.(시행, 20.9.15)